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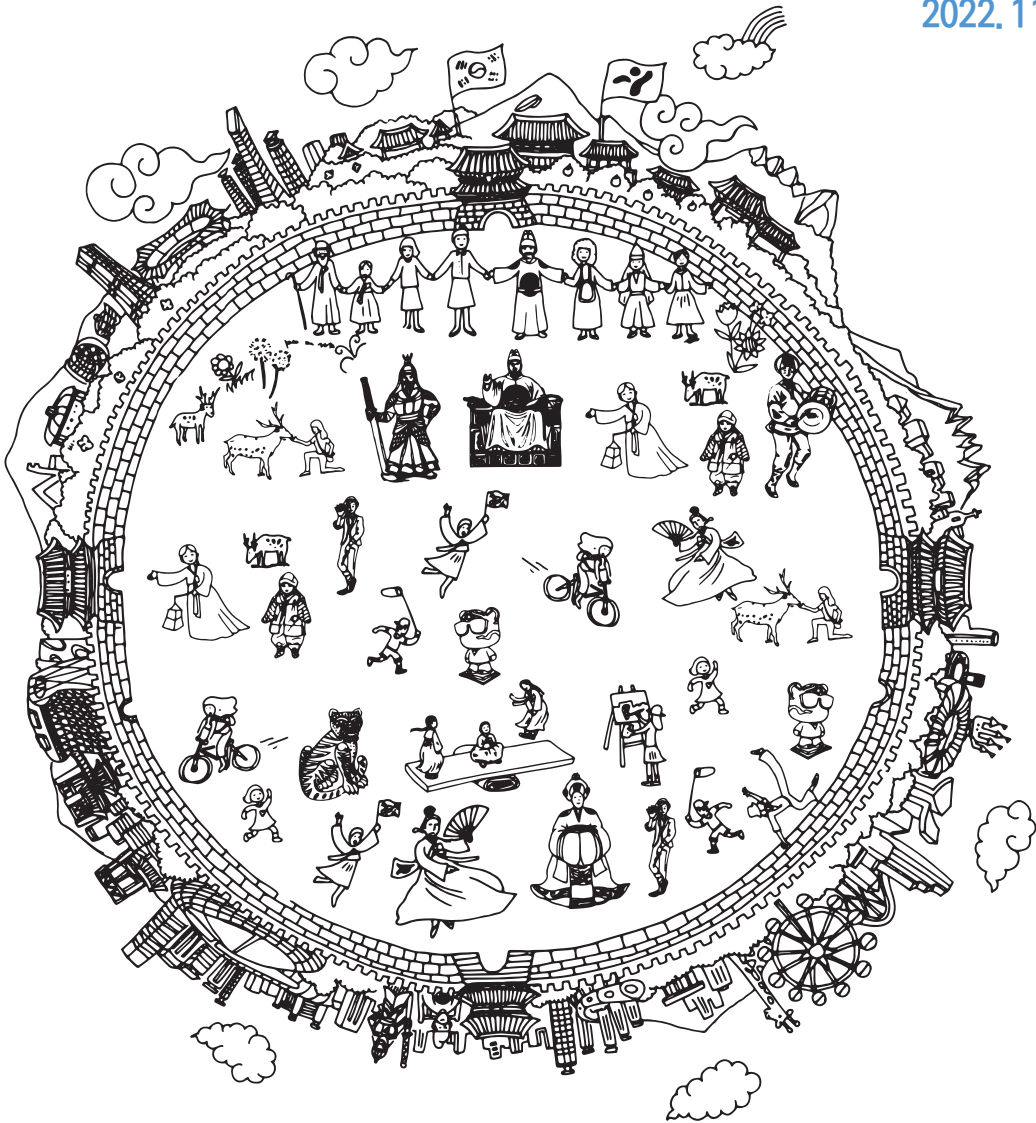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24호
2022. 11. 1.(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서울특별시규칙 제451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2

자치법규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510호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11월 1일

서울특별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주택균형개발” 을 “주택공간” 으로 하고, “도시계획공간” 을 “도시계획균형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개정(2022. 9. 6.)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칙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방형 직위 지정·운영 대상 전문위원 직위 명칭 개정(별표 1)

－ '주택균형개발'을 '주택공간'으로, '도시계획공간'을 '도시계획균형'으로 개정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